



제 429 회 국 회 (정 기 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 확대 〉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67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 확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7. 29.
3. 회 부 일: 2025.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인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스포츠’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한장애인체육의 사업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을 추가하고 있음(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장애인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u>
<u><신설></u>	<u>4의3.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u>
<u><신설></u>	<u>4의4.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u>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현행법상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는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에 맞추어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한체육회¹⁾, 지방체육회²⁾, 대한장애인체육회³⁾ 별 소관 사업]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u>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u>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1항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3)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제1항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 개정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동호인 클럽 지원 사업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클럽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년도	예산	주요내용
장애인스포츠클럽 및 동호인지원	'23년	646	동호인클럽 지원(273개소)
	'24년	646	동호인클럽 지원(273개소)
	'25년	646	동호인클럽 지원(304개소)
		360	지정스포츠클럽지원(12개소)
장애인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3년	95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연구
		400	2023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
	'24년	400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조사
		75	실감형 장애인스포츠 콘텐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5년	40	통합체육 안전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장애인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연계사업	'23년	1,300	5개 종목 리그전 운영
	'24년	2,014	8개 종문 리그전 운영
	'25년	2,764	11개 종목 리그전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개정안에 더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사업 예산 및 행정 지원을 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유형별 체육단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⁴⁾. 해당 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4) 의안번호 제2208707호,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문 의 처
02)6788-5375